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14의3] <개정 2023. 3. 2.>

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(제51조의2 관련)

1.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가. 비소·카드뮴·납·수은·중금속·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나. 바륨, 포름알데히드, o-톨루엔설포아미드,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다.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라.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
 - 마.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
 - 바. 패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사.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(항생물질·합성항균제, 합성호르몬제)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
 - 아.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자.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
 - 차. 주석, 포스파타제, 암모니아성질소, 아질산이온, 형광증백제 또는 프탈레이트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카.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타. 축산물에서 유리·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. 다만, 이물 혼입의 원인이 객관적으로 규명되어 다른 제품에서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.
 - 파. 그 밖에 축산물을 제조·가공·조리·소분·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
 - 하.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거. 대장균, 대장균군,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너. 제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더. 셀레늄, 방향족탄화수소(벤조피렌 등), 폴리염화비페닐(PCBs), 멜라민, 3-MCPD(3-Monochloropropane-1,2-diol),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(THC) 또는 칸나비디올(CBD) 기준을 위반한 경우
 - 러.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(사용 및 허용 기준을 10% 미만 초과한 것은 제외한다)
 - 머.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-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
2. 법 제5조에 따른 용기·기구·포장에 관한 규격에 위반한 것
3. 국제기구 및 외국의 정부 등에서 위생상 위해우려를 제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금지한 원료나 성분이 검출된 경우
4. 그 밖에 영업자가 스스로 제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제품의

안전성이 의심되는 경우

가. 삭제 <2023. 3. 2.>

나. 삭제 <2023. 3. 2.>

다. 삭제 <2023. 3. 2.>

5. 그 밖에 섭취하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